

제22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2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11. 13(금)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화)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 기 금 명 | 2020년도말 조성액 [㉠]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 | 2021년도말 조성액 $d = a + b - c$ | 증 감 $e = d - a$ |
|----------|-----------------------------|-----------------|-----------------|-----------------------------------|--------------------|
| | | 수입 [㉡] | 지출 [㉢] | | |
| 식품진흥진흥기금 | 830,477 | 83,074 | 350,330 | 563,221 | △267,256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식품위생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5. 검토의견

가. 기금 개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2000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1) 재원조성

-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

2) 지원기준

-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위생 교육·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3)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으로 육성자금
- 화장실 개선자금

나. 기금조성 및 운용

(표1) 2021년도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 수 입 계 획 | | | | | | 지 출 계 획 | | | |
|---------|--------|-----------------|-----------|----------|--------|---------|-------------|------------|---------|
| 계 | 보조금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예치금 회수 | 이자 수입 | 기타수입 | 계 | 비용자성 사업비 | 융자성 사업비 | 예치금 |
| 913,551 | 21,000 | 26,116 | 830,477 | 11,040 | 24,918 | 913,551 | 200,330 | 150,000 | 563,221 |

(표2) 2020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 수 입 | | | | | 지 출 | | | 집행잔액 (a-b) |
|---------|--------|-----------------|----------|----------|---------|-------------|------------|---------------|
| 계(a) | 보조금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이자 수입 | 기타 수입 | 계(b) | 비용자성 사업비 | 융자성 사업비 | |
| 129,969 | 36,000 | 38,366 | 19,483 | 33,120 | 227,693 | 77,693 | 150,000 | △100,724 |

'2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융자금회수와 기타수입(과징금수입) 등 1억 2,996만 9천원이며,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 등 7,769만 3천원으로 '20년말 기금조성액은 8억 3,047만 7,000원으로 예상된다.

다. 검토 결과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본 기금의 수익은 예금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금이자수입, 과징금수입인 기타수입 등으로 기금의 수익금 보다 비융자성 사업의 규모가 큰 편임.

○ 본 기금의

2021년도 수입계획은 9억 1,355만 1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액이 8억 3,047만 7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104만원

과징금 수입 2,491만 8천원

생애주기별 미각형성 교육과 나트륨저감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2,1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5억 6,322만 1천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민간융자금으로 1억 5,000만원

그 외 나트륨저감화 홍보물품, 위생관리 우수업소 지원 등에

2억 33만원입니다.

- 그동안 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3건에 1억 6,000만원임.

(표3) 2015년 ~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

(단위 : 천원)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 | 50,000 | - | - | 1 | 80,000 | - | - | 1 | 30,000 |

※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요식업협회에서 은행과 단체 대출협약을 하였고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임.

-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비융자성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실질적인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계획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식품위생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 2016. 10. 1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86호, 2016. 10.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요청한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